

## 국제개발협력NGO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제정 2007. 7.  
전문개정 2014. 2.

### 서문

국제개발협력NGO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빈곤퇴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대상국 주민의 요구와 참여를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NGO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본 규범의 취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NGO는 개발활동을 통해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의 현상뿐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도모한다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다.

본 규범은 단체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범을 채택한 단체는 국제개발협력NGO의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표준을 단체의 경영 시스템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또한 본 규범을 한국본부뿐 아니라 현지의 지부에까지 적용하도록 한다.

본 규범 이외에도 국내법과 협력대상국가의 법률 및 국제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단체가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따르도록 장려한다.

본 규범은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각각 조직과 사업에 관한 표준을 규명하고,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강조되는 회계, 정보 공개 부문과 NGO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행동윤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개발 NGO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

## 제1장. 조직

단체는 활동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이 제안,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1. 조직의 의사결정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단체의 회칙(정관, 규약, 규정, 규칙, 기타 유사한 문서)은 법률상의 요건과 합치해야 하며, 단체의 설립목적, 회원자격, 의사결정권한과 집행권한 및 책임, 회의의 개최빈도와 회의정족수 등을 포함한 단체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로 정하며, 집행 및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2.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혜자의 제안을 장려한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3. 직원에 대한 처우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 연수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계발하도록 한다.

## 제2장. 사업

단체는 비전과 사명에 따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이 사업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사업수행 시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을 이행해야 한다.
  - ① 존엄성, 양질의 일자리, 사회정의 및 평등성에 입각한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는 전략, 활동,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②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성평등과 성형평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④ 현지의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문화적, 토착적 접근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접근법에 우선순위를 둔다.
  - ⑤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있어

책무성과 청렴성을 배가한다.

- ⑥ 서로 다른 개발 주체들 간 개발의 목표와 전략이 공유되는 분명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상호 평등의 전제 하에 합의와 조율, 사업의 일관성을 위한 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 ⑦ 수행하는 사업에 현지의 지식과 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행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외부와 공유한다.
- ⑧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다음 세대에까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구축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인도적지원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재난구호시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crescent move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disaster relief)’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재무회계

단체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전문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국제기준 및 국가별 회계법규 및 단체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거래 내역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 ①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② 회계/재정에 관한 결정사안은 총회(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대외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

2. 재정운영에 관한 회계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재정적 책무성을 다한다.

### 제4장. 정보공개

단체는 단체의 운영, 활동 및 회계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다른 NGO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유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공시한다.
  - ① 조직관련 기본정보, 조직운영(Governance) 정보, 고유목적사업, 재무정보 이상 네 가지 사항은 필수 공개한다.
  - ② 후원자 신상 등 개인신상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연차보고서, 뉴스레터, 공지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발행하여 정보공개의 통로를 다양화한다.
2. 모금활동 시 단체의 정체성과 사업의 목적,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모금을 위한 자료 제작에 있어 협력대상국 주민의 인권과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
3.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활동 자원의 중복투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제5장. 임직원 행동윤리

개발NGO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윤리를 준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

1. 임직원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임직원은 공익활동의 수행자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단체와의 연대를 중시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어떤 형태의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도 금지하며, 단체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단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금지한다.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확고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본 행동규범을 채택하는 단체는 본 규범의 관련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NGO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활용하여 행동규범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대내외적인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